

안건Ⅲ. [의결권 행사기준]

1. 총칙

가.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3조 및 제 114조에 의거하여 신탁재산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선관주의

하나은행(이하 "회사")은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의결권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다. 개정

이 기준의 개정은 신탁자산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2. 행사기준

가. 행사방향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수익자의 권익 보호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4.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5. 회사의 지속가능성 제고

나. 행사여부

① 회사는 법 제 112조 제 2항 및 제 3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신탁재산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다. 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제 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제 112조 제 2항 및 제 3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사방법

가. 행사주체

의결권은 직접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반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나. 서면행사 등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불통일 행사

각 신탁재산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회사의 불통일행사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한다.

4. 행사절차

가. 주주총회 개최 파악

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나. 의사결정

- ① 투자위원회는 의결권의 행사 범위, 행사 절차, 행사 방법 및 행사 내용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공개한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 ② 투자위원회는 실무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주식운용 담당자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주식운용 담당자 등은 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의견청취 등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의결권 자문기관이나 위험관리담당자, 컴플라이언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5. 보고 및 공시

가. 기록 및 보고

- ① 회사는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심의·의결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록하고 이를 일정 기간(5년) 동안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주식운용 담당자는 불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기별로 투자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신탁 컴플라이언스는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년 1회 이상) 점검한다.

나. 공시

- ① 의결권 공시 담당자는 법 제 112 조 제 7 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시행령 제 114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불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한 개별 의결권 행사 내역은 사전에 정한 양식에 맞춰 년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③ 회사는 ②외에 전체 의결권 행사내역에 관한 통계·요약 자료 등을 사전에 정한 양식에 따라 년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